

특허발명자 또는 승계인 아닌 무권리자 특허출원 무효사유 - 무효 주장자에게 증명책임:

대법원 2022. 11. 17. 산고 2019후11268 판결



(1)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의 소재 =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

(2) 구 특허법(2006. 3. 3.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,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(이하 '무권리자'라고 한다)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

있다.

- (3)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
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.

지재권분쟁, 침해대응/감정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대응, A~Z 수행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